

'좋은 인재를 채용하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바램을 갖고 계신 벤처CEO와 인사 담당자를 위해(벤처다이제스트)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는 기업 장려금이 있나요?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생산성과 함께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회에 걸쳐 기업의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투자(1회)와 근무제도 도입(2회)을 지원하는 기업장려금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꼭 이용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금' 마지막 회로 기업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역량 개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정규직원보다 비정규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현재의 경력을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도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직접 선택해 무료 또는 일부만 부담하고 수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간 1백만 원, 5년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능력개발카드

신청 시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훈련 등을 받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중도에 해고되었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훈련실시 도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되나,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근로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 미수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 원, 2회 미수료 시에는 30만 원이 차감됩니다. 최대 3회 미수료 시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강은 물론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카드 신청자격도 박탈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이상, 총 16시간 이상의 과정을 제공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일반과정(정보화기초과정 포함), 외국어과정, 인터넷원격훈련을 수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http://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교류활동(세미나 등), 교양과정(시사, 일반상식 등), 취미활동 및 스포츠 과정은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석률이나 일정 평가점수를 얻으면 수강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외국어 과정,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훈련생이 최대 수강료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먼저 부담하기도 합니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업주는 별도로 훈련비를 지급하거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발급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절차 없이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http://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Q** 저희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핵심적인 부품들을 제작하고 있어서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이 특히 중요한데요. 외국어나 기타 업무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수강지원금 훈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지원금 훈련'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된다면 재직 근로자 누구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40세 이상인 근로자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 수강자는 일반과정의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80%, 외국어과정의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50%, 정보화기초 과정의 경우 9만원 또는 12만원,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은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일반과정, 인터넷원격훈련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http://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신청과 관련해서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훈련기관에 연락하고 과정 및 비용을 상담한 뒤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만 훈련비용을 환급 받을 시에는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수료

증 사본 및 자비수강증명서류를 준비해서 관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 밖에도 대학교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직원들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은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의 '통합고용서비스 기관' 고용지원센터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는 취업 및 진로 지도, 직업능력 개발, 기업지원 사업 등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노동부 소속의 통합고용서비스 기관이다. 지난 1997년 IMF로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지자 실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2005년부터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전략 과제로 설정하여 취업 및 재취업 지원, 실직자와 근로자 재교육,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업 고용지원 등 계층·연령·대상 별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이 다루기 어려운 고용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는 전국 총 84개소가 있으며, 노동부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과도 연계해 보다 더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문 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www.work.go.kr](http://www.work.go.kr) 1588-1919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www.jdb.go.kr](http://www.jdb.go.kr) 1544-1350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02-2004-7322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051-860-2153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053-667-6063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032-460-4725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042-480-6088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062-239-8033

본 페이지는 번역 청탁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궁금하신 점을 이메일 [okpr@paran.com](mailto:okpr@paran.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